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등 위반사항 즉시시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적 부담을 감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더 큰 감경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안 제115조의4 제1항 개정)
-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안 제115조의4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화 : 044-201-3761 / 팩스 : 044-201-5574